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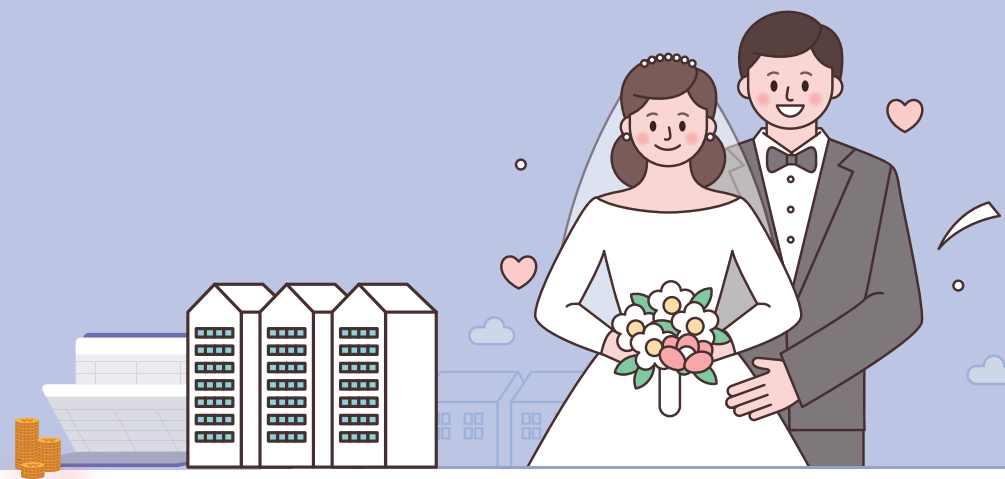
신청서류	제출대상	비고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인	- 공고문
■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인	- 금융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용도(전세, 주택, 임차), 대출잔액, 인적사항 기재
■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배우자	- 홈택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소득금액 없을 경우, 무소득 사실증명 제출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 확정일자 필수 또는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	- 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 배우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인	
■ 임신확인서	해당자	- 병원 발급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타사항

-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함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5189-6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 2. 24.(월) ~ 3. 10.(월)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4회(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지원방식 당해년도 이자 납부(예정)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자격

혼인가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2018. 2. 17. ~ 2025. 2. 17.)

거주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부부 및 부부의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주택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 구입, 일반·신용 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총당 불인정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거주자

주택 소유 세대 (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점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순위 선정자는 예산 잔액 지급
- 배점합산이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배점합산 ▶

① 자녀의 수 ▶

② 소득금액 ▶

③ 혼인가간 ▶

④ 거주기간

신청방법

신청인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기간 2025. 2. 24.(월) ~ 3. 10.(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통보방법 신청 결과 (선정, 미선정)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방문 신청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격 심사

서류 보완 및 자격심사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대상자 통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SMS 전송)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지급시기 2025. 4월 중(신청인 계좌로 입금)

